전화금융사기 피해 보장보험 보험금 청구서



1. 피보험자 인적사항

피보험자	성명	현 대 인	주민번호	700000 -	1234567	연락처	010 - 1234 - 1234
	직장명	현대상사	하시는 일	경리업무			
현대카드 이용정보	카드번호	7777-7777-777	7-7777	카드론 이용일자	2012.05.07	카드론 이용금역	병 300 만원

2. 사고사항

사고일시	2012 년 5 월 10 일 (13 시 30 분경)	사고금액	금 이천만 용	원(₩ 20,000,000)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자세히 기재, 필요시 별지이용) 상기일시경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건이 발생하여서 연락했다고 하며, 다른 불법계좌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사이트에 내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하였는데							
사고경위	사고경위 2시간 가량 후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니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 같다고 하여 계좌를 확인해 보니 내 계좌에 있던 이천만원이 불상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고							
	""							
771707	2012.05.10.16.00.74	기리거리니	T - 74+11					
경찰신고일자	2012.05.10.16:00 경	관할경찰서	종로경찰서					
사기범 계좌정보 (귀하께서 송금하신 계좌)	은행명: 현대은행 계좌번호 : 777-7	77-77777	예금주 : 사기범	외 4건				

3. 보험금 수령계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하실 경우						
은행명	현대은행	계좌번호	123-1234-1234	예금주	현대인	
사고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 수령권을 현대카드㈜로 위임하실 경우에는 아래 위임사항에 본인 서명 및 인감날인 바랍니다.						
보험금 수	수령위임 금액	금 <i>삼백만</i>	원 (₩ <i>3,000,000</i>) (위임0	부 및 금액은 선택가능)	
피보험자 본인은 귀사로부터 수령할 보이스피싱보장보험 보험금 중 상기 금원에 대하여 현대카드㈜로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Π	l보험자 서명 :	<i>현 대 인</i> (인)	

2012 년 **5** 월 **12** 일 청구인

형구인 *현 대 인*



구비서류 : 관할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1 부

사고금액의 은행 송금확인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보험금지급처 통장사본 1 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부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특별법에 따라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각 1 부 현대카드론의 "대출거래확인서" 또는 현대카드론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입출금내역서" 1 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22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및 제 33 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개인(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검찰, 법원, 소방서(화재증명, 119 구급구조), 공공기관(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산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제조합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를 보험금 지급업무,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대응 및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증빙서류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u>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u>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함 중의하지 않음 □}
 - □ 귀사는 상기 개인(신용)정보와 상기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등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업무, 의료심사(대물사고 제외), 의료자문(대물사고 제외),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사고정보의 집중·관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생명보험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기관, 위탁콜센터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보유 및 이용됩니다.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우리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보험가입 사항),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지급내역)를 보험금지급 • 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본 조회동의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합 동의하지 않음 □}
 - □ 귀사가 상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상기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2. 5. 12.

보험금 청구인 : 현대인



